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 해설: 핵심

요점 및 신규정 이해

2026.7

Issue 7

개요

2026년 7월 24일, 재정부, 세무총국은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¹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21호, “21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세무총국은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² (국가세무총국 공고[2026]15호, “15호 공고”)를 21호 공고의 징수관리 보충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상술한 공고에서는 역외신탁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개인소득세 과세 규칙을 명확히 했고 상응하는 조세회피방지 조치를 도입했으며 관련 징수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번 Newsflash에서는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의 주요 규칙과 핵심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

21 호 공고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역외신탁에 편입하고 역외신탁을 통해서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개인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유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에 기초하여 상기 공고는 역외신탁에 대해서 세수 정책 규칙을 구체화하고 징수관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一、역외신탁 전 생애주기 주체별, 단계별 과세 규칙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 개인에 대한 글로벌 소득 과세,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경내원천소득 과세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역외신탁의 설정, 존속 및 종료 등 주요 단계와 관련하여 21 호 공고는 재산을 역외신탁에 편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주체별, 단계별로 과세 규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21 호 공고에 따른 거주자 개인 및 비거주자 개인의 역외신탁 설정, 존속 및 종료 단계에 대한 과세 규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1. 역외신탁의 개인소득세 기본 과세 규칙

1.1 거주자 개인 역외신탁의 개인소득세 처리

단계	납세인	소득 성격	소득 계산	납세신고 기한	기타 요점
1.설정(재산 편입)	거주자 개인 (주 1, 이하 동일)	재산 양도소득	재산 편입 당시 시장가치에서 재산의 취득가액과 합리적 비용을 차감함.	편입 후 다음연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경내 및 경외에서 발생한 재산 양도소득. 세금 납부 후 재산 취득가액을 편입 당시 시장가치로 조정함.
2.존속기간(수익 발생) (주 2)	거주자 개인	재산 양도소득	연도별로 계산, 연도 내 손익 상계,	수익 발생 후 다음연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실제 배분 여부와 무관함. 두 가지 유형의

			손실 이월 불가.		소득 항목을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며, 서로 상계할 수 없음. 신탁 비용 공제 불가. 세금 납부 완료 수익은 실제 배분 시 과세되지 않음
		이자, 배당, 분배소득	연도 별로 계산, 다른 종류 소득과 합산.		
3.종료(수익 청산)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 분배소득	종료 당시 신탁 재산 시장가치에서 취득가액과 합리적 비용을 차감함.	청산 완료 후 다음 달 15 일 이내(규정에 따라 등록, 5 년으로 분할하여 균등하게 납부 가능)	연도 중간에 종료한 경우, 종료 전 당해연도 수익은 단계 2 에 따라 납세 신고를 처리함.
특수 상황 – 존속기간 동안 거주자 개인이 비거주자 개인으로 전환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 분배소득	신분 전환 당일 신탁 재산 시장가치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함.	신분 전환 후 다음 달 15 일 이내	연도 중간에 신분을 전환한 경우, 전환 전 당해연도 수익은 단계 2 에 따라 납세 신고를 처리함. 세금 납부 후 재산 취득가액을 전환일 시장가치로 조정함.
특수 상황 – 존속기간 동안 거주자 개인이 사망	수탁인 신고 대행 (주 3)	이자, 배당, 분배소득	사망 당일 신탁 재산 시장가치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함.	사망 다음 달 15 일 이내(규정에 따라 등록, 5 년으로 분할하여 균등하게 납부 가능)	신탁을 비거주자 개인이 승계하거나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 연도 중간에 승계한 경우, 승계 전 당해연도 수익은 단계 2 에 따라 납세 신고를 처리함 세금 납부 후 재산 취득가액을 사망일 시장가치로 조정함.
	신탁 거주자 개인 승계	신탁을 거주자 개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 거주자 개인의 역외신탁으로 간주, 관련 세수 규칙 적용.			

주 1: 재산을 편입한 거주자 개인을 말합니다.

주 2: 2026 년 1 월 1 일 전 거주자 개인이 역외신탁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세무처리는 본문 제 3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주 3: 신탁의 수탁인 또는 기타 지정 경내 기관을 말합니다.

재산을 편입한 거주자 개인을 납세 중심으로 함: 거주자 개인이 재산을 편입하여 설정한 역외신탁에 대해서는, 그 거주자 개인을 기본 납세 주체로 하며, 재산을 편입하여 신탁을 설정할 때와 존속기간 동안 신탁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촉발됩니다.

여러 거주자 개인이 공동으로 역외신탁을 설정함: 이 경우, 개인이 편입할 당시 역외신탁 재산 시장가치가 역외신탁 전체 재산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신탁 재산 및 소득을 구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개인 경외 세수 공제: 거주자 개인이 역외신탁과 관련하여 경외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납부한 개인소득세 성격의 세금은 법에 따라 당기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2 비거주자 개인 역외신탁의 개인소득세 처리

단계	납세인	소득 성격	소득 계산	납세신고 기한	기타 요점
설정	비거주자 개인 (주 1)	재산 양도소득	재산 편입 당시 시장가치에서 재산의 취득가액과 합리적 비용을 차감함.	편입 후 다음 달 15 일 이내	경내에서 발생한 재산 양도소득
존속기간 (주 2)	배분을 받은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 분배소득	연도별로 계산	배분을 받은 후 다음연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거주자 개인이 실제로 배분액 취득시 납세
종료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 분배소득	종료 당시 신탁 재산 시장가치	청산 완료 후 다음 달 15 일 이내	
특수 상황 – 거주자 개인이 승계	신탁을 승계한 거주자 개인	거주자 개인 역외신탁 세수 규칙 적용			

주 1: 재산을 편입한 비거주자 개인을 말합니다.

주 2: 2026 년 1 월 1 일 전 비거주자 개인이 역외신탁 존속기간 동안 거주자 개인에게 분배한 소득의 세무처리는 본문 제 3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비거주자 개인 역외신탁의 존속과 종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수익 배분 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 개인을 납세인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거주자 개인이 실제 배분을 받은 시점을 납세의무 발생 시점으로 합니다.

2.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과세 규칙 요약

•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 적용 범위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은 경외 법률에 의해 설정된 신탁 또는 신탁 기능을 갖춘 기타 법적 구조에 대해서 적용되나,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고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펀드회사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역외신탁 구조 중 경외 실체

21 호 공고의 규정에 따르면, 역외신탁이 보유·지배·관리하는 적격 경외 실체에도 역외신탁 과세 규칙이 적용됩니다. 21 호 공고 제 13 조, 제 14 조에서는 적격 “경외 실체” 및 “지배 경외 실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경외 실체”를 회사, 파트너십기업, 재단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 비중, 실질적 운영, 자금 사용 용도, 경영 의사결정 등의 요소를 고려한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외 실체가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주소 보유 거주자 개인 신분 판정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³ 규정에 따르면, 주소 보유 거주자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상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21 호 공고 제 11 조는 “외국 국적 또는 경외 장기·영구 거주권을 보유한 개인이라도 주요 경제적 이익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주소 보유 거주자 개인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주소 보유 거주자 개인의 신분 판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二、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조세회피방지 조치

21 호 공고는 여러 가지 조세회피방지 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역외신탁 “명의신탁” 구조: 신탁 설정 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통하여 자신이 실제 출자, 부담, 통제하는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개인이 역외신탁에 재산을 편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 개인이 재산을 역외신탁에 편입했으나 거주자 개인이 이를 실제로 통제하는 경우, 거주자 개인이 재산을 편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 개인의 역외신탁이 비거주자 개인에게 수익을 분배하였으나, 그 수익을 거주자 개인이 실제로 취득·사용·통제·처분하는 경우, 역외신탁이 해당 거주자 개인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역외신탁을 통한 재산 저가 이전: 역외신탁이 분배, 증여, 이전, 저가 양도 등 방식으로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재산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재산 양도소득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공동으로 역외신탁 설정: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역외신탁을 공동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거주자 개인이 전체 재산을 역외신탁에 편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주자 개인 역외신탁의 수익 분배 간주: 비거주자 개인의 역외신탁이 거주자 개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신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 3 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이전·제공하는 등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역외신탁이 거주자 개인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三、기존의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소급 적용 요건

21 호 공고는 기존 역외신탁의 설정 및 존속기간 중 발생한 미납 세금에 대하여 소급 징수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과도기간을 제공합니다. 공고 시행일(7 월 24 일)부터 90 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연체료를 징수하며, 위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계	소급 기간	기타 요점
설정(재산 편입)	거주자 개인: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비거주자 개인: 2023 년 1 월 1 일부터 공고 시행일까지	미납 개인소득세 세액이 비교적 큰 경우, 추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존속(수익 발생/ 수익 분배)	2026 년 1 월 1 일 이전의 과거 기간	소득 항목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자, 배당, 분배소득으로 분류하여 일괄 추가 납부함.

四、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정 요약

15 호 공고는 역외신탁 개인소득세의 납세 신고 시점, 관할 세무당국, 각 단계별 사항 적용 신고서, 보고서 및 관련 지원 서류, 세무처리 경로, 기간별 납세등록 절차, 관련 당사자 책임 의무 등 징수관리 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 관할 세무당국 결정

통상적으로 역외신탁 개인소득세의 관할 세무당국은 1. 역외신탁에 편입된 재산과 관련된 경내 주요 생산경영 기업의 등록지 세무당국, 2.역외신탁과 관련된 경내 재산 소재지 세무당국, 3. 납세인의 경내 상시 거주지 세무당국 순서로 결정됩니다. 납세인이 경외 상장기업의 실질적 지배인인 경우를 예로 들면, 납세인이 지분 또는 계약을 통해 지배하는 경내기업이 갑 지역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납세인이 경외 상장기업과 관련된 지분 등 재산을 역외신탁에 편입하면, 그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관할 세무당국은 경내기업의 등록지, 즉 갑 지역의 세무당국입니다.

15 호 공고의 해설⁴에 따르면, 2025 년도 정산납부신고와 세금 추납 및 환급을 이미 처리 완료한 납세인의 경우, 정산납부신고 세무당국을 관할 세무당국으로 계속 하며, 이는 역외신탁 납세인 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수탁인의 책임

15 호 공고는 세수징수관리에서 신탁 수탁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역외신탁 운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익 및 분배의 상황을 정확하게 회계처리 할 것. 2. 납세연도별로 "이자, 배당, 분배소득", "재산 양도소득"을 회계처리 하고 거주자 개인 및 비거주자 개인을 지원하여 납세 신고 및 자료 제출 등 사항을 완료할 것.

주의사항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개인 역외신탁의 전반적인 세수 투명성과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며, 역외신탁에 대한 조세 규제도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통형 관리 방식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역외신탁을 이미 설정한 관련 개인은 개인 세무상 거주자 신분과 현재 역외신탁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산 편입 계획 및 존속기간 동안 수익이나 분배 상황을 정리 및 대조하여 관련 세무 영향을 식별·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추납과 관련된 경우에는 90 일 과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체료 및 기타 관련 세무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역외신탁 관리 과정에서 각 단계 또는 사항의 세무 영향에 주목하여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역외신탁을 조정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는 개인은 이번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감안하여 역외신탁 전 생애주기의 잠재적 세무 영향을 역외신탁 계획의 종합적 평가 및 관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역외신탁 관련 세무 사항은 복잡한 만큼, 납세인이 관할 세무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별 사례에 맞는 정책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석

1.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21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1277/content.html>
2.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26]1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51338/content.html>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0/c5194444/content.html>
4. 《국가세무총국의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해설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5/c5251326/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7 月 30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